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비(안 제6조)

-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항목 추가
- 구미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추가
-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나.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안 제8조)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자연재해저감시설 → 방재시설
-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 「감염병」
- 영 제74조제1호마목 → 영 제74조제8호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장기예치 기금액””으로,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을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를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활하게 사용”을 “사용”으로, “지정금고”를 “구미시의 지정금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6조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바. 구미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제6조제2호 중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을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제6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구미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가목 중 “풍수해 저감계획”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제6조제6호(종전의 제7호) 중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을 “영 제74조제8호에 따른”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0%”를 “70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제8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과”를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으로, “따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의”를 “시장은 기금의”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국장 또는 과장중”을 “실장·국장 또는 과장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두되”를 “1명을 두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를 “회계연도”로, “하며”를 “하고”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를 “회계연도마다 구미시의회”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 -----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 ----- ----- ----- ----- ----- “장기예치 기금액”---

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신설>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생략)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
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
처계획(EAP) 수립, 재해복
구사업 분석평가
나.·다. (생략)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
당 등 경비

- 바. 구미시 소유·관리 공공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2. -----

- 방재시설(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구미시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

-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나.·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 설>

<신 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시장
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
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
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
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
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
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6. 감염병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
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
4조제8호에 따른 -----

지원한다.

② -----

----- 70퍼센트 ---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미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
장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
----- 관리하여야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
----- 구미시 기금운
용심의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실장·국장 또는 과

장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장 중-----.

⑤ -----
----- 1명을 두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 위원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 회계연도-----

----- 하고-----
-----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

-----.

1. ~ 4. (현행과 같음)

③ -----

<u>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u> 제 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u>조례 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회계연도마다 구미시의회</u>----- -----. 제13조(시행규칙) -- <u>조례의 시행</u> <u>에</u> ----- -----.
--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1.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관 실 · 과		안전재난과
입 안 자	과 장	류 형 욱
	담 당	강 창 조
	담 당 자	김 현 준 (480-6742)